###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6. 11. 14 규칙 제 885호

개정 2008. 6.16 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
일부개정 2012. 6. 1 규칙 제1039호

일부개정 2016. 2. 26 규칙 제1123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일부개정 2017. 8. 7 규칙 제1163호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20. 3. 25 규칙 제1227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"조례"라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6. 16, 2017. 8. 7, 2020. 3. 25〉
- 제2조(융자신청)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지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도의 사업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 6. 1, 2017. 8. 7〉
  -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8.7>
  - 1.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
  - 2.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
  - 3.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
  - 4. 자활후견기관의 경영 · 지도계획
  - 5.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사업전망 등
  - 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, 학자금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 〈개정 2012. 6. 1〉
  - ④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학증명서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것에 한 한다. 〈개정 2012. 6. 1, 2012. 6. 1〉
  - ⑤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. 〈신설 2012. 6. 1〉

####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- 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서약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제출한다. 〈신설 2012. 6. 1〉
- ⑦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8호, 제9호 서식에 따른다. 〈신 설 2012. 6. 1〉
- ⑧ 사업개시 및 사업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0호, 제11호 서식에 따른다.〈신설 2012. 6. 1〉
- ⑨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및 자활기금 (감면·상환기한 연장)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2호, 제13호 서식에 따른다. 〈신설 2012. 6. 1, 개정 2017. 8. 7〉
- ① 자활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, 제15호에 의한 기금사용신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. 〈신설 2012. 6. 1〉
- ①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. 〈신설 2017. 8. 7〉
- 제3조(융자금 상환)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. 〈개정 2017. 8. 7〉
  - 1.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.
  - 2. 상환금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  - 3.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②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 〈개정 2017. 8. 7〉
  - 1.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.
  - 2. 상환금(이자포함)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4조(상환보증)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연 5만원 이상,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는 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할 경우에는 융자원금의 1.2배 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8. 7〉
  -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2. 6. 1, 2017. 8. 7>
- 제5조(연체자의 조치) ①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

사용한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,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등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8. 7〉

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17. 8. 7〉

[제목개정 2017. 8. 7]

제6조(융자금 감면)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고자할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·확인하여, 그 의견을 문서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, 8, 7〉

제7조 삭제〈2017. 8. 7〉

- 제8조(융자금의 관리)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부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 산입력 자료는 훼손·손실·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〈개정 2020. 3. 25〉

「전문개정 2012. 6. 1〕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, 제3조제2항, 제4조, 제5조, 제8조제2호 및 제4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규칙의 폐지)「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」은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

부칙〈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〉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2. 6. 1 규칙 제1039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6. 2. 26 규칙 제1123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시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〉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. 8. 7 규칙 제1163호〉

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3. 25 규칙 제1227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[별지 제1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(개인)

1. 신청인 인	<u>l</u> 적사항						
성 명			생년월일		ㅁ 남	ㅁ여	
주 소				집전화			
주 소				핸드폰			
2. 신청내용	□ 전세점포 약	임대자금	□ 창업(사	업)자금 [	] 기타		
신청금액	일금	원	0]	자율	년	1%	
(건) (1 기	근 다	된	(연체	이자율)	(년	5%)	
상환계획	년거치 후 년	변이내 균등	분할상환 또	도는 같은 기	간 내 일	시상환	
3. 재정보증	□ 보증인	□ 신용	보증보험증	권			
4. 보증인 인	<u></u> ]적사항						
성 명			생년월일		ㅁ 남	ㅁ여	
<b>z</b> ,				집 전화			
주 소				핸드폰			
「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 보증인: (서명 또는 인)						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	
1. 사업계획서(서식) 1부. 2. 재정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. 3. 보증인의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. 4. 서약서(서식) 1부. 5. 통장 사본 1통 6. 개인정보 이용·수집 및 제공 동의서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지원신청서(기관·단체)

소속 단체・	기관				대표자		
사 업 장 취	스 소				(	<b>5</b>	)
자 산 정	보	- 일금 - 내역		원			
공동체	성	명	생년월일		주 :	소	서명(날인)
구성원							
(자활공동							
체의 경우)							
신청금액	일	금	원		기자율		1%
			Ľ.	(연기	헤이자율)	(년	5%)
자금의 사용용도		선세점포	임대자금 🗌	운영자	금 □ 창업(/	사업)자금	
상환계획	년	거치 후	년이내 균등	분할상:	환 또는 같은	은 기간 내	일시상환
자활기금을	신청	하며	설치 및 운용 할 경우 취소됨	]에 동의	의합니다.	제2조의 구	구정에 따라
			년 -	월	일		
		1	대표자 :		(인)		
광 명 시 경	장 귀형	화					
구비서류	2. 3. 4. 5. 5.	재정보증 보증인의 서약서(~	서   센터장의 추천 	명서 긱 및 인김	† 1부. †증명서 각		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사업계획서

### 1. 사업개요

창업형태	□ 개인(수급자 및	차상위계층) 🗌	자활기업	및 자횔	근로	사업단	- 🗆	기타	( )
사업명									
		사업정	사업장 🗆 있		]음	(		<u> </u>	흥)
) Al	□ 신규사업 □ 기존사업	위 치							
사 업 내 용	□ 신규사업 □ 기존사업 투자 □ 업종변경	임대내	8		] 세 ] 세 ] 타	세 ( 세 ( 타 (		원) 원원 원)	
-1 &	현 재 종사직종	□ 자영업( □ 근로자( □ 기타 (	)		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		자영 근로 기타	업( 자( (	)
기 술 보 유		경력 (	년)	직=	종	Ž	[력	(	년)
	자격증 혹은 보유기술	□ 있음 □ 없음		종	류				
	일 정	획 (창업	준비/지	사금시	용내	역 등	<del>_</del>		
※ 사 건별이란정이	1월2월2월2월2월 今 3 4월2월 9월 9월 9 5 6 6 6 6 6 6 1								
	총 사 업 소요자금	원					.11		
사업자금 운 용	신청융자 금 액	원	예상 <sub>2</sub> 경비1	소요 내역			예상매출액	-월년 ( -년대	별 ) 개출액 )
	부족자금 확 보 □확	보 🗌 미확보					액		,
기술·경영 지도계획	□ 지역자활센 □ 소상공인지 □ 직업훈련기 □ 기타 (	터 원센터 관 )	지 싶	도받고 은내용					

과명시	자활기금	선치	미	우요	조례	시해규치
5 5 71	까들기ㅁ	글시	~	$\overline{}$	11111	거행비적

### 2. 사업계획

□ 사업비 총괄 내역

총 사업비	소 요	. 재 원 확 보 계 획	
2 VI H II	융자신청액	자부담	기타

□ 소요 경비 내역 : 견적서 별도 첨부

분류	세부항목	신청금액	자부담	비고
보증금				
시설비				
기설비				
이 서 키 그				
운영자금				
합계				

❑ 자활기금 대여 신	청 사유

[별지 제4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###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

1. 신 청 액 : 일금 원정(₩ 원정 )

2. 용 도:

3. 융자조건

ㅇ 융자기간 :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

ㅇ 이 율 : 연 1%(연체이자율 : 연 5%)

4. 재산정도 : 일금 만원정도

5. 가족사항

성명	관계	연령	직업	성명	관계	연령	직업
	본인						

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인과 연서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주소:

성 명 :

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연대보증인 주소:

성 명 :

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신청인과 관계:

#### 광 명 시 장 귀하

※ 구비서류: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, 통장사본 1부, 보증인 재정보증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이용·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

#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

1.	인적사항
----	------

ſ		W . 3 63 43			7		3 =3 -3 =	-3	
١	성 명	생년월일	성	별	Ŷ	소	전화번호	刊	1
ĺ			ㅁ남	ㅁ여					

ட						
2.	생활실	일태				
3.	소득	및 재산 현	현황			
4.	사용용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획			
L						
5.	상환계	ll 획				
<u>.</u>	0 2 7	···				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### 생활안정자금(학자금) 융자 신청서

#### 1. 학생인적사항

성 명	생년월일		ㅁ 남	ㅁ 여
학교명/전공학과	연	락처		

- 2. 신 청 액 : 일금
- 워정(₩
- 워정 )

- 3. 용 도 : 학자금
- 4. 융자조건
  - ㅇ 융자기간 :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
  - 이 율 : 무이자(연체이자율 : 연 5%)
- 5. 재산정도(보호자) : 일금 만원정도

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보호자 및 연대보증인과 연서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학생 성명:

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학 교 :

보호자 주 소 :

성 명 :

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연대보증인 주 소 :

성 명 :

(인) 연락처:

생년월일 :

신청인과 관계:

#### 광 명 시 장 귀하

※ 구비서류: 재학증명서 1부, 통장사본 1부, 보증인 재정보증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이용·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

(추 1)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재 정 보 증 서
□ 채무자 주 소 :
성 명:
생 년 월 일:
□ 융자액 : 일금 원정(₩ )
융자 대상자가 광명시 자활기금(생활안정자금)을 융자 받음에 있어 향
후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「민법」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
것을 확약합니다.
년 월 일
연대보증인 주 소 :
성 명: (인)
생년월일 :
신청인과 관계 :
광 명 시 장 귀하
첨부서류 : 인감증명서, 과세증명서 각 1부

(추 1) - 1574 -

[별지 제7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서 약 서

주 소:

성 명:

생 년 월 일:

본인은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(6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)하거나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경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약자 성명 (인)

광 명 시 장 귀하

### [별지 제8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	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								
자활사업	기 관	명			법	인 명			
실시기관	성	명			생년월일 국인등록번호	<u>(</u> )		남 ㅁ	여 🗆
개인창업	주	소			연 5	각 처		전화 : 팩스 :	
	구	분	□ 자활기업 □ 개인창업(생		ト활근로시 금융자 여		)		
자 활 기 업	명	칭							
(사업단)	참여 (명		총 ( )명 • 조건부수급 > • 일반수급 자	아	- • 자 - • 차	활급여특 상위	·례자_ -		
점포운영	업	종					개시 정일		
계획	소 재	지						·	
임대관계	임 대 성	인 명			전 번	화 호			
사항	이 형	대 태	□ 전세 □ 일부월세		임 평수 금	대 및 액			
자활기업	및 지	활근	로사업단에 대한	점포	임대 지	원을 위혀	하여 위	l와 같	이 신
청합니다.									
			년	Ç	일 약				
			٦			_			
			신청인 7	사활기	업대표		(	(인)	
			추천인 기	<b>사활후</b>	-견기관징	-	(	(인)	
광명시장	귀하								

[별지 제9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# 사 업 계 획 서

1.	入	ŀ업	가	요

기 관 명	담 5	당 자	성명: 전화번호:
신청인 성명	형	태	□ 자활기업 □ 자활사업단
업 종	참여	인원	
사 업 목 적			

2. 임대희망점포 현황

소 재 지		약 도
구 조		
규 모		
임 대 액 (지원대상금액)	전세금: 월세금:	
기타비용 (지원외예상 소요금액)		

3.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

가.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

구	분	매출 수입금	지출액	적립금	비고
7:	1				
000	0 년				

※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

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나. 향후 추진계획			
1) 창업 및 점포운	-영 비용조달계획		
※ 자금확보방법 5	및 예상매출액(월별,년	l간)등을 포함하여 자	세히 기술할 것
2) 향후 사업추진	계획		
※ 사업의 구체적인 독	F표 및 운영계획을 >	자세히 서술할 것	
	년 월	일	
	신청인	(인)	
(추 1)	- 1578	} -	

### [별지 제10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		사업개	시 신	고 서		
	기 관 명 (성 명)					
사업실시 기 관	주 소			연 락 처		전화 : 팩스 :
	기 관 장 성 명	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1		
사 업 장	상 호 명			전화번호	-	
사 십 강	소 재 지			사 업 지 등록번호		
사업종류						
취급품목						
지원완료 통 보 일						
사업개시일						
귀 기관 <sup>9</sup> 위와 같이		점포운영계약	체결과	관련하여 시	<b>나</b> 업을	- 개시하였기에
		년	월	일		
			신고	인		(인)
광명시장	귀하					

# [별지 제11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		,	나 업 변	경 (	신 고 시	ન			
		관명 성명)			법	인	명		
사업실시 기 관	기관	간장성명			생년 (외국인	년월 9 ] 등록			
	주	소			연	락	처	전화 : 팩스 :	
사 업 장	상	호 명			전 호	<b>화</b> 번	호		
가 웹 경	소	재 지							
변경사항	-	변	경전		변경후			변경사유	
① 상 호									
② 업 종									
③ 사업양도·	포기								
④ 임대보증급	1								
⑤ 기타 신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								
귀 기관 고합니다.	의 점.	포임대사'	업과 관련하	여 /	나업을 변	변경하	<b>유</b> 였기에	기위와 같이	신
			년		월	일			
				신 고	그 인			(인)	
광명시	장 귀	하							

(추 1)

[별지 제12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

(앞면)

신청 (기관・ <sup>1</sup>				대표 성	E자 명			사업7 (생년	아번호 월일)			
소자 (주:					·			전화	번호			
신청시	h업명									•		
심의	결과	전부지원	1			일	부지원		П	지원		
			결 정				내	8				
	신	청 사 '	겁	ㅂ]				심 의	결 정	사 업	刊	
		소 요 경	刊	재 두	1			3	는 요 7	見りズ	H f	<u> </u>
계	기금 보조의	자체 부담액	후육	원금	기	타	계	기금 보조액	자체 부담의	후원	금	기타
상환기	기간	년거치	기 후	년	균	등분	할상환	또는 같	은 기간	내 일	시	상환
상환조	조건	이자율			연	1%		연체이기	4	연	5%	
관계구	구정							항은 광명의 의 규정의			· 섣	]치 및
		활기금 설 통지합니다		및 운	용 3	<b>즈</b> 례	제17조의	리 규정에	의하(	겨 위와	같	이 결
								년	월		일	
				광	<u></u>	병	시	장				

#### (뒷면)

☆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

- 1.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의 사용 신고서(별지 제13호 서식)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합니다.
- 2.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·중단 ·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월 이전에 사업변경(중단·폐지)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3.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 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#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

☆ 융자금 상화 등 안내

- 1.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.
  -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받은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
  -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
- 2.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, 고지서를 매월 정한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3.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%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,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및 채무자에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[별지 제13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(감면 • 상환기한 연장) 신청서

1. 신청인 인	]적사항	구	분	□ 주	채무기	<b>⊹</b> □	] 보증	인
성 명		생기	견월일				남 ㅁ	여
주 소		집	전 화					
T 公		핸	드 폰					
2. 융자현황								
융자금액	일금	원		융지	<b>사일</b>	년	월	일
융자목적	□ 자활기업 창업·운영자금 □ 전세점포 임대사업 □	_ 생활	개인 • 안정자	단체· 금 [	기관 / ] 기티	사업지  -	금	
상환계획	년 <i>가</i>	ネ	년 성	상환				
상환시작일	년 월		상환	종료일		년	월	
상환금액			미상	환금액				
3. 신청내용								
구 분	□ 감면신청 □ 상환 기한연	장 ረ	· 신청					
신청금액			Ç	연장희망	·기간		가	월
신청사유								
「광명 <i>)</i> 따라 위와	시 자활기금 설치·운용 조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	」시 받고	행규칙 자 신	제6조, 청합니다	제11 ŀ.	조의	규정	에
	년 월		일					
	신청인 : 보증인 :			인) 인)				
광명시?	당 귀하							
구비서류	○ 신청사유 증빙서류							

# [별지 제14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

구 분	□ 자활기업 □ 학자금 □		전세점포인	심대자금 □	생활안	정자금
성 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		
주 소						
사용처		사용내역		사용금액		
광명시 에 맞게 사 광 <b>명 시</b>	자활기금으로 _ 용하였기에 위와 ? 장 귀하	같이 신고합니	<u>다.</u> (※ <u>사</u> 용 월 일	받은 자금을 상 후 1월 이다 고인	<u>세 제출</u> )	가시의 목적 (인)
구비서후		등 사용증  역이 많을 기		별도 첨부		
		기금 미사	용 사유시			
구 분	□ 자활기업 사 □ 학자금 □ 7	 업자금 □ 전		•	활안정	자금
구 분 성 명		 업자금 □ 전	 ]세점포임디	·  자금 □ 생		자금
		입자금 □ 전 ]타(	 ]세점포임디	·  자금 □ 생· 		자금
성 명		업자금 □ 전 ]타( 생년월 <sup>(</sup>	실 일	·  자금 □ 생· 	번호	자금 ※별도 제출
성 명 주 소 미사용 금액 광명시	□ 학자금 □ 7 자활기금으로 못하였기에 사유/	업자금 □ 전 ]타( 생년월 <sup>9</sup> 미사용 / 년 월 서를 제출합니	일에 지원받 네다. 일 일	·  자금 □ 생     전화	번호 · 계획 위와 같	※별도 제출

[별지 제15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개정 2017. 8. 7〉

####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

1	사	업	명	
Ι.		H	ď	٠

- 2. 총 사 업 비 :
- 3. 사업기간:
- 4. 사업비 집행사항

구 분	사업비 집행내역				비고
丁 ゼ	총사업비	기금보조액	자부담	후원금등	
계					
집행액					
잔 액					

#### 5. 참고자료

- 1)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
- 2)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
- 3)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
- 4) 기타증빙자료 각 1부

위와 같이 광명시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.

#### ( ※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)

년 월 일

신 청 인(대표자): (인)

광 명 시 장 귀하

[별지 제16호 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 〈신설 2017. 8. 7〉

####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, 제17조, 제18조, 제24조에 따라 광명 시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 하는데 (동의, 부동의)합니다.

- 1. 개인정보의 항목(취득범위)
  - 자활기금 채권·채무 관계 및 융자지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재산, 소득 등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
- 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 목적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융자지원 사고·조사·분 쟁해결·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등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채권·채무 거래 종료일에서 5년이 되는 시점까지
- 4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
  - · 수집·이용 및 제공자 : 광명시 및 시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
  - 제공하는 개인정보 : 성명. 주소 등 상기 1과 같음
  - 이용목적, 보유 및 이용기간 : 상기 2,3과 같음
  - ※ 융자자 및 보증인은 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명시 자활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5.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,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(개 인정보의 열람,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, 삭제 및 파기, 피해구제)를 미 리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 융 자 자 성 명 : (인) 생 년 월 일: 주 소 : 전화번호 및 연락처: 보 증 인 명 : (인) 성 생 년 월 일: 주 소 : 전화번호 및 연락처 :